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2234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나692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22344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조세형, 유태훈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이현주, 유진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오인철, 하희진

변론종결 2021. 8. 26.

판결선고 2021. 10.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388,931원 및 그중 139,7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2020. 11. 11.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 (1) E 유한회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G 소재 지하 3층, 지상 11층의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7. 10. 17. 수급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10. 17.부터 2019. 4. 23.까지, 계약금액을 1,397,000,000원, 계약보증금을 279,400,000원(계약금액의 20%)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표지에 기타 계약조건으로 ' 1) 계약보증금은 위약별로 하며 계약 위반시 공정율과 관계 없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5조(계약의 변경)

-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당초 계약 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 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 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 대금 증액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8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기본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 계약 표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0조(지체상금)

-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아니한다.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준공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8.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제48조의 기간 내에 대금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참가인과 피고 회사는, 변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2018. 11. 30. 계약금액을 1,397,000,000원에서 1,705,000, 000원으로, 계약보증금을 279,400,000원에서 341,000,000원으로 증액하는 1차 변경계약을, 다시 2019. 4. 1. 계약금액을 1,705,000,000원에서 1,738,000,000원으로, 계약보증금을 341,000,000원에서 347,600,000원으로 증액하는 2차 변경계약(지체상금률은 1일에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였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증서 제출 등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계약보증금 중 1/2인 139,700,000원(계약금액의 10%)에 관하여는 I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참가인에게 제출하였고, 나머지 139,700,000원(계약금액의 10%)에 관하여는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위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피보험자를 참가인으로, 주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 보험기간을 2017. 10. 17.부터 2019. 4. 23.까지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증서를 원고로부터 발급받아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보증하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하고(제3조 1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2호)’, ‘피고 회사가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 회사와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하고(제4조 ①항),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항)’고 정하고 있다.

다. 채권가압류 등과 추가 보증보험증권의 미제출 등

(1) J은 피고 회사가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제3채무자를 참가인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단1477)을 받는데 이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비사용료 청구의 소에서 13,926,000원과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같은 법원 2018가소39447)이 확정되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9타채1100)을 받은 다음 2019. 3. 25. 참가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0451)를 제기하였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금을 매달 지급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을 송달받자 2019. 3. 26. 피고 회사로부터 ‘참가인으로부터 공사일정을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토공사(가시설해체, 인발 포함)를 시행하며 추후 부대토목공사도 공사일정에 맞추어 완료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미불금(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기타비용 등 일체)은 피고 회사의 책임하에 지불하며 참가인에게 어떠한 추가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3) 그런데 그 직후 위 추심금 사건의 소장이 참가인에게 송달되자 참가인은 피고 회사에게 '에게 장비사용료를 4월 18일까지 지급한 후 추심금 소송을 취하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 기한 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지급보류한 기성금에서 참가인이 직접 지급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4) 참가인은 위와 같이 1, 2차 변경계약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이 당초 279,400,000원에서 347,600,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019. 4. 15. 피고 회사에게 증액분의 1/2에 해당하는 34,100,000원 $\{=(347,600,000\text{원} - 279,400,000\text{원}) \times 1/2\}$ 에 대하여(나머지 증액분에 대하여는 I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발행의 보증보험증권을 같은 달 19.까지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통보서를 보냈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청구 등

(1) 참가인은 피고 회사가 위 다. (3), (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9. 4. 2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52조 1항 3호, 2항 8호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되었다.

(2)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특약에 근거하여 보험금 139,7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참가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자 피고 회사는 이의를 제기한 후 참가인을 상대로, '피고 회사가 적자 누적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원고 발행의 보증보험증권 추가 발급조건이 안되어 발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초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하는 과정에서 모두 수령하여 당초 발행된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 해지하고 증권발행한도 확보 및 추가 증권발행을 진행하여 하였으나 완료확인원에 날인을 해주지 않는 등 참가인의 의도적인 방해로 추가 증권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변경계약 중 부대토목공사 33,000,000원 상당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시공완료한 상태임에도 참가인이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부당함'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109가단5126504)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조정담당 재판부가 2019. 9. 19. " 1. 피고 회사는 소를

취하하고, 참가인은 이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와 참가인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9. 11. 29.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3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추심금 사건의 진행경과와 지연손해금 등

(1) 위 추심금 사건 진행 중 참가인은 J의 위 채권가압류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외에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 K의 채권가압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카단1048)이 2019. 4. 25.에, 채권자 L(M)의 직접 지급요청서가 2019. 4. 26.에, 채권자 N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37065)이 2019. 6. 17.에 각 참가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이유로, 2019. 7. 24.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금제2790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잔액 14,086,244원을 공탁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25.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통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을 이유로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2019. 11. 30.)부터 30일이 되는 2019. 12. 29.까지는 연 6%로서 이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은 688,931원(= 139,700,000원 × 0.06 × 30/365)이고, 그 다음날부터 적용이율은 연 9%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 13 내지 18호증, 21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증사고는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보증하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하고(제3조 1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1, 2차

변경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347,600, 000원으로 증액하였음에도 증액분의 1/2에 해당하는 34,1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이를 이유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 이 사건 특약에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 위반시 공정율과 관계 없이 피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계약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이 앞서 본 바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계약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동액 상당의 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하도급받은 공사 중 가시설 사이드 파일 33본의 인발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완료하였고, 위 인발작업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합벽 시공 시 콘크리트가 흘러들어 사이드 파일과 건축 옹벽이 압착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 해지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하도급받은 공사가 전부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 회사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12, 2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3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또한, J에 대한 장비 사용료는 참가인이 지급 보류하고 있던 기성금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앞서 본 추심금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0,388,931원(= 지급보험금 139,500,000원 + 확정 지연손해금 688,931원) 및 그중 지급보험금 139,7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1. 11.까지는 연 9%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